

PHRC(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 위원회) 및 COVID-19 주택 및 상업 재산

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 위원회(Pennsylvania Human Relations Commission)는 당신이 살고, 일하고, 배우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곳에 관한 특정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집행합니다.

PHRC는 고용, 주택, 상업 재산, 및 공공 시설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Pennsylvania Human Relations Act(“PHRA”, 펜실베이니아 인간관계법)을 집행합니다. 거쳐 시설 및 상업 재산에 대해, 개인들은 다음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 출신국
- 혈통
- 인종
- 성별
- 가족 상태
- 피부색
- 연령
- 종교
- 장애
- 사용자의 실명, 난청 또는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한 안내 동물 또는 반려 동물의 사용
- 반려 동물 또는 안내 동물의 핸들러 또는 트레이너
-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개인의 장애.

PHRC가 집행하는 법은 질병 통제 본부 또는 다른 연방, 주, 또는 지방 당국의 요건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PHRA(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법)과 시행 규정은 이들 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체에 계속 적용되지만, 그 법과 규정은 거쳐 시설 및 상업 재산의 소유주를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 시설의 소유주가 COVID-19에 관해 취해야 하는 조치에 대해 CDC 또는 주/지방 공중 보건 당국이 만든 지침과 제안을 그 소유주가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쳐 시설 및 상업 재산의 소유주는 공중 보건 당국의 지침은 COVID-19 펜데믹이 확산되면서 필시 변경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쳐 시설 및 상업 재산 소유주는 안전을 유지하는 것과 장애인에 합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가장 최신 정보를 계속 따라야 합니다.

거쳐 시설이란 무엇입니까?

용어 거쳐 시설에는 한 명 이상의 개인, 집단, 또는 가족의 주택 거주 또는 침소로 사용 또는 점유하거나, 또는 사용 또는 점유하고자 하거나 하기 위한 건물, 구조물, 이동식 택지나 시설, 또는 그 일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판매, 임대용으로 내놓거나, 그러한 건물, 구조물, 이동식 택지 또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찾을 목적으로 보유한 공지가 포함됩니다.

거쳐 시설의 몇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거쳐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포함되지만, 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단독 주택
- 아파트 단지
- 주택 당국 재산
- 이동식 주택 단지
- 노인 생활 보조 시설.

몇 가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쳐 시설에 있어서 어떤 차별 금지가 COVID-19에 적용됩니까?

당신의 임대주는 보호받는 계층 또는 COVID-19에 대한 공포와 낙인을 이유로 하여 당신에 대해 차별할 수도 없고, 당신을 퇴거시킬 수도 없고, 당신에게 아파트를 떠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불법적 차별이 될 수도 있는 몇 가지 행위는 무엇입니까?

보호받는 계층에 근거한 경우:

- 주택을 판매, 임대, 또는 유보하기를 거절함
- 돈을 빌려주기를 거절함
- 다른 판매, 임대, 등의 조건을 규정함
- 특정한 장애-관련 편의시설을 만들기를 거절함

불법 활동의 예:

아시아인 또는 아시아계 미국인 세입자가 COVID-19 팬데믹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입자의 설비 보수 요청에 응하기를 거절함.

아시아인 또는 아시아계 미국인 세입자가 COVID-19 팬데믹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입자에게 임대주기를 거절함.

COVID-19로 입원한 개인을 위해,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체 방법과 같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

세입자가 차별을 항의하는 경우 그 세입자에 대해 부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개인이 펜실베이니아주 인간관계 위원회에 고충 신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위원회 소송 절차에 참여했던 이유로 그 개인에 대해 보복하거나, 또는 어느 사람이든 PHRA에 의거한 불법적 차별 행위를 돕거나 교사하거나, 또는 어느 조치이든 그에 대해 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활동의 예: 불법적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고충 신고서를 PHRC에 제출한 세입자를 퇴거시킴.

연방 정부는 주거 환경 내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보호도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는 공공 주택 또는 연방 정부가 자금을 댄 주택에 있어서 COVID-19와 관련하여 차별을 당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보호로 제공합니다. 예컨대, 미국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주택 도시 개발부) 장관 Ben Carson은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FHA, 연방 주택 행정청)에게

FHA-보험에 든 담보가 있는 단독 주택 소유주에 대해 이후 60일 동안 즉시 압류 및 퇴거의 정지를 시행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러한 일시 정지는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미국의 개인, 가족 및 사업체의 재정적 안녕에 끼친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https://www.hud.gov/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HUD_No_20_042

당신의 연방 시민권, 그리고 당신 또는 가족이 여기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 당신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상세히 알아보십시오.

https://www.hud.gov/press/press_releases_media_advisories

퇴거에 관한 검찰총장 Josh Shapiro의 지침:

검찰총장 Josh Shapiro는 임대주는 이 비상 사태 동안에 세입자를 자신의 집에서 퇴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서에 따라, 펜실베이니아주 대법원은 모든 법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발발로 인한 퇴거 소송 절차의 폐지를 명령했습니다. 그 명령은 주에 있는 모든 재산 소유주, 관리자 및 임대주뿐만 아니라, 담보 대출 중개인 및 대출기관에 적용됩니다 라고 Shapiro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부당하게 당신의 집에서 퇴거당했거나 당신의 재산이 부당하게 압류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은 고충 신고서를 여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ttorneygeneral.gov/submit-a-complaint/>

PHRC는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습니까?

당신이 불법적 차별의 피해자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당신은 고충 신고서를 펜실베이니아 인권 관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현 고충 신고서 서식의 사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www.phrc.pa.gov>

그 서식은 333 Market St., 8th Floor, Harrisburg, PA 17101-2210으로 우송할 수 있거나 다음 주소로 이메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PHRC@PA.GOV. 긴급 지원 또는 지침이 필요한 개인인 경우, 오전 9:00와 오후 5:00 사이에 [717-787-4410](tel:717-787-4410) 번으로 전화하십시오.